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5. 7. 9. 2013나27475]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가부시키가이샤 만요(株式會社 万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호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1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가합30095 판결 【변론종결】2015. 3. 26.

【주문】

]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2,448,704원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납품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3,673,057원 및 그중 45,873,157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6.부터,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3.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7.부터, 18,099,9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부터, 6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9.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기초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 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손해배상 원금을 10억 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3,673,057원 및 그중 45,873,157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6.부터,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3.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7.부터, 18,099,9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는 2007. 9.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부터, 6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9.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기초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 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손해배상 원금을 10억 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3,673,057원 및 그중 45,873,157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6.부터,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3.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7.부터, 18,099,9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부터, 6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9.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기초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 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손해배상 원금을 10억 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의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3,673,057원 및 그중 45,873,157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6.부터,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3.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7.부터, 18,099,9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부터, 6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9.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기초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 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손해배상 원금을 10억 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3,673,057원 및 그중 45,873,157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6.부터,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3.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7.부터, 18,099,9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부터, 6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9.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기초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 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손해배상 원금을 10억 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1. 전제된 사실관계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유]

11. 전제된 사실관계